

# 審 查 報 告 書

##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 2000. 12. 16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0. 12. 18
- 라. 上程日字 : 2001. 2. 14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地域經濟課長 南圭宗)

### 가. 提案理由

- 서산시노사정위원회가 도 지침에 의거 구성되어 있으나,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당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산시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主要骨子

- 목적 : 서산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서산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기능 : 협의회는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협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구성 및 운영 : 협의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인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요구 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정함(안 제7조)
- 실무협의회 : 협의회는 노동쟁의 발생시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가(지역경제과장) 됨을 정함(안 제8조)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내 노사관계 안정, 실업 및 고용대책과 노사정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 법률의 근거와 위임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며 또한 노사의 협력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대의 조류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2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근로자, 사용자위원중 각각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협의회의 주된 목적이 노사간의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함인데 노사가 침예하게 대립이 있는 경우, 직무대행권에 대하여도 대립이 예상된다.

-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12조(운영 규정)에서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제8조(실무협의회) 제2항 실무협의회 위원이 근로자대표 1인, 사용자 대표 1인 등으로 되어 있으나

- 이를 근로자측 대표, 사용자측 대표 또는 근로자 대표측에서 추천하는자 1인, 사용자 대표측에서 추천하는자 1인 등으로 하여 제3조 협의회 위원의 직위와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모든 회의는 회의록이 작성, 비치되어 협의회 회의 내용과 의결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하나 근거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회의록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 서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 190 호
----------	---------

제출년월일 : 2000. 12.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제정이유

- 서산시노사정위원회가 도 지침에 의거 구성되어 있으나,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당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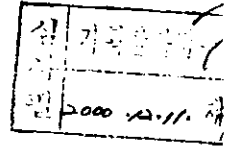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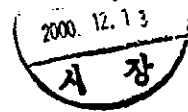
## 2.주요골자

- 가.목적 : 서산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서산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나.기능 : 협의회는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협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다.구성 및 운영 : 협의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함. (안 제3조).
- 라.위원의 임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안 제5조).
- 마.회의 :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인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정함. (안 제7조).
- 바.실무협의회 : 협의회는 노동쟁의 발생시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가(지역경제과장) 됨을 정함. (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법률 제5,990호)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6,519호)



## 서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서산시노사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근로자·사용자 위원중에 각각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총무위원회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위촉위원은 경찰서관계과장 1인, 지방노동관서관계과장 1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서산시 소재 노동조합 대표자 4인 이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서산시 소재 사업장의 사용자 대표자 4인 이내, 노동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④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정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요구할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노사 관계에 관련된 사안은 근로자·사용자 위원이 1/2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협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노동쟁의 발생 시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노동관계당사자인 근로자 대표 1인, 사용자 대표 1인, 서산시 관계자 1인, 노동사무소 관계과장 1인 그리고, 노사관련 전문가등 7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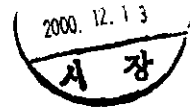
제9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위원장은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협회와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이행의무)①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이해당사자포함)는 협회의 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노·사 관련단체에 이행을 권고하고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설명

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